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정관

2007. 02. 28. 제정

2018. 05. 04. 개정

2021. 02. 20.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간디공동체”(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3번지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생명, 평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터전으로 생명 평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삶으로 실천하며,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지속적인 의식 함양을 통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명과 평화의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2. 지역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주민 지원 활동
3. 생명과 평화의 가치 실천을 위한 의식 고취 활동
4. 공동체성 회복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간디공동체 센터 설치 및 운영
5.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대안교육 지원활동(제천간디학교)
6.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사업
7.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타 지역/단체 간의 연대, 지원활동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이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 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1. 일반회원은 본회의 뜻에 찬동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며, 각종 모임과 사업에 참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함
2. 후원회원은 본회의 뜻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함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 외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함
4. 회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후원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에서 15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가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사 정수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합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

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그 범위는 세부규칙을 따른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의사록) ①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의사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안건 및 의결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과 감사가 서명, 날인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0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산하 조직의 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자금차입)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 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회계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국, 분사무소

제 40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0조의2(분사무소)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하여 분사무소를 둔다.
 ② 분사무소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3길 17 1층과 2층 등에 설치한다.
 ③ 분사무소에 분사무소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분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 제41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업무보고)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 한다.
 ②본회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통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